

未來大學의 變化와 大學施設의 適合性

The Perspectives of Future University and the Relev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南 廷 杰*
Nam, Jung Kul

ABSTRACT

The main them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lev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in terms of university change in near future.

The paper reviewed the changing process of higher education and its role in Korean society briefly, proposed the developmental directions of higher education in future in several perspectives, and introduced educational reform plan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proposed on May 30, 1995 by advisory group to the president.

In this context, the irrelevance of university and college education facilities was pointed out, and proposed some new and modernizing guide lines of educational facilities such as flexibility, openness, corelationships and consortium among related institutes, optimization of related laws and rules, exemption from the direct ruling and control of government.

This paper also suggested some ideas of facilitating educational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future change trends of university and college education.

I. 시대사회의 변화와 대학교육

근대화 이전까지 한국의 대학, 즉 고구려의 태학과 경당, 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 조선조의 성균관 등은 귀족계층의 자녀를 대상으로 치자계급의 엘리트나 관리 양성의 기능을 주로 하였다. 그리하여 전통사회의 신분제도와

전근대적 관료사회를 유지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들 전통적 대학은 19세기 말 개화기의 근대화와 더불어 도입된 서구식 신학제에 밀려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개화기와 더불어 한국에는 1905년에 설립된 한성법학교, 양정의숙, 충실학당 대학부, 1908년에는 대동전문학교, 이화학당 고등과, 배재학

* 正會員, 副會長 檀國大學校 師範大學 教授
本 論 文 은 本 學 會 '95 年 度 春 季 學 術 講 演 會 에 서 發 表 된 內 容 이 ㅁ .

당 대학교, 경신학교 대학교(연희전문학교의 전신)등 학교가 설립되었다(김종철 등, 1989).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일제의 한국 강점으로 인하여 대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일제는 식민지통치에 적합한 하급관리와 단순 노동자의 양성을 위하여 기초적인 실업교육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고등교육은 최대한 억제하였다. 사실 일제 식민지하에서 가장 억압당하고, 미미했던 것이 이분야였다. 그리하여 일제말에 남북한을 통틀어서 28개 고등교육기관이 있었다고 하나(남한에는 19개), 대학은 유일하게 경성제국대학뿐이었고, 나머지는 전문학교와 각종 학교였다(남정걸, 1982). 경성제국대학도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면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상은 일본인이었다.

광복후 한국 대학교육의 변천과정을 보더라도 그때 당시의 시대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존속되어 왔다. 광복후의 대학교육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4기로 구분할 수 있다(윤정일 등 1990)

제1기(1945년-1960년) : 한국 국민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그동안 억눌렀던 고등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과 고급인력에 대한 갑작스러운 수요의 증가, 6.25전쟁중의 재학생의 징집연장과 같은 병역상의 혜택, 국립대학의 도별 설치, 휴전과 더불어 재건기의 황망한 틈바구니에서 일부 사학의 기업화 등으로 고등교육의 과도한 양적 팽창기를 누렸다.

제2기(1961년-1970년) : 이러한 50년대의 무계획적인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은 질적 저하와 고등유민의 양산, 농촌경제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때마침 1960년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을, 이는 제2공화국인 민주당정권을 8월에 탄생시켰으나 정치적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를 야기시켜, 다시 5.16 군사혁명에 의해 등장한 군정은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하고 대학의 통폐합이나 폐지, 정원 통제(이는 65년 대학생 정원령으로 제정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등 강력한 대학정비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조치와 관련하여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으나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정부의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였다는 문제점이 수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적되고 있다. 이 시기는 대학 정비와 통제기라고 할 수 있다.

제3기(1971년-1987년) : 70년대는 경제사회개발계획의 성공적 수행과 새마을 운동의 성과에 힘입은 전에 볼수 없었던 경제성장에 따라, 고등교육에서도 합리적 정책방안이 여러 모로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에 실험대학의 운영에 의해 지방대학의 육성과 대학 특성화,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로 극심한 대학입시경쟁과 과열과외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졸업정원제의 실시 등을 골자로 한 7.30교육개혁조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발족과 교육개혁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등 대통령자문기구에 의한 고등교육개혁방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이 비교적 계획적으로 시도되고, 대학교육개혁을 위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노력을 경주한 시기이다.

제4기(1988년이후) : 대학교육의 거대화와 다양화로 정부의 통제능력에도 한계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민주화 자율화라는 일반사회의 분위기와 대학가에도 불어닥쳐 등록금정책, 교양과목 운영, 총학장 선출,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 탄력적 총정원 관리 등을 대학의 자율에 위임하게 되었고, 고도산업사회, 정보화사회,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고급인력의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대학의 기능과 역할의 다양화와 특성화, 교육과정의 발전적 개편 등이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졸업이수학적, 다학기제의 운영, 입시전형 등 점차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자율화기를 마치고 있는 셈이다.

II. 미래사회의 전망과 대학발전의 방향

21세기나 미래사회는 미래학자들이 전망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겪고 있다. 이미

‘미래의 충격’은 현실의 충격이 되었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으로 철의 장막도, 베르린의 장벽도, 죽의 장막도 거친지 오래이며, 교통·정보·통신의 발달로 전세계는 지구촌으로 축소되고, 전인류는 지구의 촌락민이 되었다. 이제 국경을 전제로 한 국제화, 개방화 대신에 세계화, 정보화, 지식학습사회를 맞이하여 전세계가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그 어느 것 하나 교육, 특히 대학교육과 관계없이 불가능하다.

김영철 등(1992)은 대학교육체제의 발전과 관련하여 미래사회의 변화모습을 (1)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2)과학 기술개발과 정보화 촉진 (3)개방국제화추세의 심화 (4)사회구조의 다변다원화 (5)자율민주화 사회의 진전 (6)인력 수요 구조의 다양화 (7)교육수요의 다양화를 들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92)는 이와 같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교육체제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기본방향 및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각각 제시하고 있다.

• 대학체제의 변화에 대한 전망

- (1) 교육 민주화나 대학 자율성의 신장과 그 정착
- (2) 지원조성을 위한 대학정책으로의 전환
- (3) 대학교육체제의 다양화·실질화
- (4) 교육기회의 보편화와 개방화의 불가피
- (5) 정원관리와 학사운영상의 경직성 배제
- (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의 활성화와 외부 지원제도의 정착
- (7) 교육의 질과 대학운영의 생산성 보장을 위한 대학평가제도 정착
- (8) 產·學·研·官의 협력과 대학간 협동의 강화

• 대학발전의 기본방향

- (1) 대학교육의 질적수준과 그 생산성 제고
- (2) 대학운영의 자율성 신장
- (3) 대학교육 체제의 다양성 추구
- (4) 대학의 균형발전과 그 역할 분담

- (5) 대학교육연구의 국제화 추진
- (6) 대학운영의 효율성 제고

• 대학교육발전 방안

- (1) 대학의 교육·연구체제에 있어서의 역할분담과 특성개발
- (2) 학생선발 및 정원관리의 단계적 자율화
- (3)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현대화·합리화추진
- (4) 수업과 연구기능의 강화
- (5) 학생복지와 캠퍼스 환경개선의 촉진
- (6) 시설·설비의 현대화
- (7) 도서관·전산소의 확충과 기능 강화
- (8) 대학행정과 지원체제의 강화
- (9) 대학간 협동 및 산·학·관·연의 협력체제 강화
- (10) 대학평가체제의 강화와 그 정착

한편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1994)의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 모형의 다원화·특성화

- 사회가 요구하는 연구인력, 전문인력, 기술인력 등 각종의 인재 양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지닌 다양한 대학 모형을 대학 스스로 선택하여 대학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종래의 획일적인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개정함
- 전공 이수학점 및 교양필수 이수학점에 관한 규정을 대학 모형에 따라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21세기에 필요한 신인력 양성에 적합한 대학 체제로 개혁함
- (2) 연구와 교육지원체제의 혁신
 - 대학원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함.
 - 각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교수의 연구실적 중심으로 집행토록 함.
 -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도서관, 실험실습실, 전산센터 등 지원시설을 선진국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함.
 - 세계의 정상급 대학과 공동연구체제를 수립

하여 우리의 학문을 세계의 정상급으로 끌어올림.

- 산학겸임교수제도, 산학학위제도 등을 검토하여 산·학·연협동체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함.
- (3) 자율적인 고등교육 행정체제의 구축
 - 대학관리기구를 보통교육행정으로부터 독립시켜 수준높은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 국립대학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수 법인화 등 개별대학에 알맞는 운영 방식으로 변화시킴.
 - 대학회계와 감사관계법을 대학의 자율적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개정함.
 - 대학의 운영과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대학간의 질적 경쟁을 유도함.

III. 대학시설의 발전 방향

대학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교수와 학생을 중핵으로 하는 필요한 인적자원과 교지와 교사, 체육장, 도서관, 기타 부속시설 및 설비 등의 물적 자원을 요건으로 설립된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물적 자원을 대학의 시설이라 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중세 이래 발전된 서구식 대학의 모형대로 학문의 연구와 교수의 기능, 그리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미국식 대학에서 강조하는 사회봉사라는 기능을 사명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하겠다. 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은 국가와 민주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대학은 나름대로 창학이념이나 건학정신, 또는 교육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와 같은 세가지 대학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이를 구체화하여 실현하고 있다.

Caudil은 교육과 학교시설은 時空을 같이 하

거나, 같이 해야 하며, 학교건축은 문명을 반영하고, 교사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기능을 반영해야 한다고 교육과 시설과의 관계를 밝힌 바 있다(남정걸, 1994). 대학의 시설 또는 여가의 예외일 수가 없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이 발전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사회가 급격히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교육개혁이나 발전방안이 마련되고, 법과 제도적으로 이를 구체화작업이 한창이기 때문에, 대학의 시설측면도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기본 입장에서 앞으로 대학시설의 기본방향을 몇가지 차원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 1) 대학의 특성과 학사운영의 자율화에 부응하여 대학시설의 기준은 대폭 완화되고 융통성이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대학은 자율 또는 자치를 그 본질적 속성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은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자율이란 타의 간섭이나 통제가 없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의 자율화란 각대학 나름대로의 창학정신이나 건학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대학을 독자적, 창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학문의 자유, 연구의 자유, 교수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대학 자체의 행정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정부의 대학행정도 가능한 한 대학에 대한 지시와 통제, 규제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현재 대학행정의 자율화와 관련해서 조정이 불가피한 법령과 규칙 등은 다음과 같다.(전성연 등, 1994)

수업 연한 : 교육법 제110, 115, 120, 122조

학년 시작 : 교육법 제115조

입학 시기 : 교육법시행령 제120조

학기 구분 : 교육법시행령 제61조

수업 일수 : 교육법시행령 제62조

졸업소요학점 : 교육법시행령 제120조

이수단위 및 학점당 이간수 : 교육법시행령 제120조

학기당 취득 기준학점 : 교육법시행령 제120조
교양과목 학점 배정기준 : 교육법시행령 제119조
등록제도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4조
교원과 시설설비의 기준 : 대학설치준령

* 위에서 이미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어(1995년 2월 28일) 학기와 수업일수, 졸업학점과 학기당 취득학점, 교양과목 학점배정기준 등은 대학의 학칙이 정하도록 상당폭을 조정하여 대학의 자율에 맡긴 바 있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것은 대학설치기준령의 적용범위의 적절성이다. 대학설치기준령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인가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설비의 기준(교육법 제85조)을 마련한 것으로 1955년에 제정 공포되어 수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쳤고, 1982년에 전면 개정된 후에도 3차례의 개정을 본 것이다. 말하자면 신설대학의 설치인가 조건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이는 신설대학에만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시설은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남정걸, 1984).

첫째, 일제시대나 해방 직후 불과 수백명이나 몇천명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 발족하였다가 대학교육의 수요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대하는 학생인구를 수용하기에 급급하여 이렇다할 마스터플랜이 없이 그때 그때 제한된 공간에 무질서하게 건물을 증축한 캠퍼스가 있고,

둘째,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여 애초부터 합리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발족한 신설대학이나 기존대학이 이전하는 경우와,

셋째, 기존 캠퍼스를 본교로 삼고 새로운 부지에 분교를 새로 조성하는 대학이 있다.

이상과 같은 대학 나름의 유형이나 대학의 지역적 조건, 대학의 특성과 전통을 무시하고 기존의 모든 대학에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대학의 자율적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2) 대학의 개방화와 평생교육적 기능의 강화에 따른 대학시설의 공공성과 연계성을 기해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시나 통제와 규제가 완화되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약화되는 반면 지방정부와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체제가 강화되기 마련이다. 이미 70년대의 실험대학운동을 통해서 지방대학의 육성이나 특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니와, 이제 지방자치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정착되면, 각 대학은 그 지역의 학술·문화의 창조와 과학·기술 발전의 거점으로서의 위치가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이미 국립대학을 도립대학으로 전환하자는 발상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앞으로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망은 대학의 평생교육적 기능을 불가피하게 한다. 제3의 물결로 불리우는 지식사회, 정보화사회에서의 대학은 전통적인 보수성, 고착성, 경직성, 비유동성으로는 대학의 기능을 담당할 수가 없게 된다. 말하자면 대학의 문호를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해서 개방하고, 대학의 봉사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점을 대학시설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권역별 산·학·연·협동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의 연구시설과 설비나 고가의 기자재, 첨단과학·기술시설은 그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와 중복투자되지 않고 상호 공용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시설을 일반 사회에 공개·개방할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시설도 공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은 이미 영호남의 6개 대학이 콘소시움을 형성하였고, 산업체 임직원의 교수겸직 제도 허용되었다. 무하느 경쟁시대의 인적자원의 양성은 이론과 실체가 일치하는, 교육과 생활이 직결되는 체제에서 가능하다. 우리는 그동안 대학의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논의함으로써, 이와 같은 대학의 입지인 지역과의

연계성을 너무 무시해 왔던 획일적인 사고를 떨쳐버릴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시설기준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연구시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지, 체육장과 체육관, 강당 등의 현행 획일적 기준은 지역적 여건과 대학간의 컨소시엄, 그리고 산학협동 여하에 따라 융통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둘째, 평생교육적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의 증대, 고학력화 현상과 이에 따른 의식수준의 고도화,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적 열망, 지식·정보기술 변화의 폭과 속도의 급격성으로 인한 수명단축 등 초·중등 수준의 학교에서는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교육적 욕구야말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만이 감당할 수 있다. 21세기의 학습사회는 대학이 주도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대학은 성인대학생(adult student)이 계속 증가되어 성인중심대학(andraversity)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수년내로 예상되는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한 공백을 매꾸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학은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새로운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과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1994년 현재 52개의 대학들이 이미 사회교육원이나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성과를 보고 있다(최운실, 1994). 그런데 여기에 성공적인 대학은 이와같은 성인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는 대학임이 분명하다. 대학의 시설계획에는 반드시 사회교육적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대학은 여로 모로 소도시(small city)와 같게 되고, 사실 어떤 곳에서는 그 지역보다 더 큰 대학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학사운영의 개편에 따라 시설·설비기준의 산정이 달라져야 한다.

대학의 시설도 초·중등학교의 시설과 마찬가지로

원리와 절차로 계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대학시설은 초·중등학교의 시설과 유사한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 무릇 시설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기능이나 활동을 수용하도록 계획된다. 교육시설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질 교육프로그램을 수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은 초·중등학교의 프로그램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특색이다. 우선 횡적인 면에서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기초 교양과목의 프로그램이 광범하게 설정되고, 공업·상업·농업·교육·법학·보건·약학·의학 등 전공프로그램과 음악·미술·체육 등 예술·문화프로그램이 복잡다기하게 심화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종적인 면에서 보면 고등학교과정과 별다른 교양과정에서부터 학부, 석사, 박사과정 그리고 포스닥(post-doctoral studies)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대학시설은 이들을 다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종합대학만 하더라도 학부과정에서 상당수가 근 100개에 가까운 학과에 2만명내외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보통교육단계와는 달리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재학생의 수가 광범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고 봉사하는 프로그램 또한 광범하고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광범하고 다양하며 복잡할 뿐 아니라 개별 대학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관련학과를 통폐합하여 학부제로 운영하게 되고, 2학기 내지 5학기에 이르는 다학기제를 운영하고, 입학정원도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일임하며, 주5일제 수업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시설기준령의 시설기준 산출 방식은 대폭 수정되고, 대폭적으로 완화되거나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하나의 예만 든다면 실험실습 설비기준은 학과당기준에서 전공별 학부당 기준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수공학적 방법의 도입에 의한 시설·설비 기준의 적정화를 기하여야 한다.

정보화사회, 첨단과학시대라는 미래사회가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또는 교육사회이다.

금년들어 Y대학의 명교수의 명강의를 출석할 필요없이 화상으로 S회사의 간부사원들이 시청하고, K대학에서는 어떤 강의를 학생들이 집에서 수강하는 在宅授業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올해안에 출석강의를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 畫像講義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이를 중국 연변의 해외 동포들에게도 실시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와 같은 원격화상수업이 지금 막 초·중등학교에서 시도되고 있다. 서울의 J고등학교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在宅授業을 부분적으로 시작하였고, 강원도 홍천군내 5개 국민학교 및 분교 사이에 원격화상교육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들 초·중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학습내용을 아동이 단순히 반복하도록 하는 단순 훈련 반복형(drill and practice)의 단계를 한차원 넘어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형태로서 새로운 지식을 학생에게 제시하고 설명하기도 하며, 학생의 질문이나 반응에 따라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하는 개인지도형(tutorial) 코스웨어이다. 앞으로는 특히 대학에서는 모의실험형(simulation) 코스웨어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실제 생활이나 실험실에서 겪게 될 위험이나 번거로움을 제거하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시간, 경비를 절약하고, 공해나 위험이 없이 안전한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해 준다.

이렇게 원격화상강의에 의한 재택수업이 광범하게 실시된다면, 앞으로의 대학엔 그렇게 많은 교지와 강의실이 필요치 않을 것이며, 교수의 수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고, 더구나 실험실습실의 모습과 기자재가 현저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간의 교육격차나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시설의 격차도 많이 완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미래 전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정된 시설설비 기준은 時宜性(timing)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적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도서관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수만권의 책을 CD-Rom 하나에 다 저장하게 되고, 책과 영화까지 한꺼번에 보여주는 CD-Rom인 boovies(book+movies)까지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책없는 도서관이 출현할 전망이다. 그러므로 장서 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의 도서관의 여러 기준 또한 크게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1세기의 대학은 전통적 대학과는 캠퍼스없는 대학(campusless college), 책없는 도서관(bookless library), 교수없는 강의실(professorless classroom)이라는 3무대학시대(3-less college age)를 전망하기도 한다(이현청, 1994).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복잡성과 더불어 이와 같은 교수방법상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될 전망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적인 수준의 법규로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된다. 대학설치기준령은 법령이라는 기본 속성이 경직성과 보수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학과와 그 학과의 시설이나 설비, 기자재의 종류나 양을 규정하지 못하면서도, 이제는 활용가치도 없는 노후화 폐물화되다시피 한 설비나 기자재가 공간만 차지하고 장부상의 기록으로 남아있게 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세계화에 대비하여 대학시설은 질적 제고와 현대화를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건물은 이미 세계에서 자랑할 만 하다. 교문과 총장실은 분명히 세계 일류급이다. 그러나 웅장한 도서관의 외형과는 달리, 그 안의 장서와 학술잡지는 빈약하기 그지 없다. 자연계열의 실험기기는 관련업계보다 뒤지고 있고 교수들의 연구업적은 재임용에 필요한 조잡한 것이 대부분이라 한다. 일언이폐지하면,

형식만의 대학교육체제를 갖추었을 뿐이나 教育立國時代를 지나, 국제적 교육전쟁시대에 들어선 이점에서 과연 승산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서명원, 1989).

한국의 대학의 교육여건은 70년대 이후 계속 악화되었다. 이는 고도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정책과 무관하지 않거니와 특히 81년도부터 시행했던 졸업정원제로 인하여 불과 4년후에 학생수는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충원이나 시설·설비의 확충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기에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고등교육을 우리는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는 정보화사회, 지식사회, 첨단과학시대, 고도산업사회, 전문화사회, 두뇌의 무한경쟁시대, 세계화시대에 돌입하였거니와 그 어느 것 하나 대학교육과 무관한 것은 없다. 이에 한국의 대학은 커다란 방향전환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양적 성장위주에서 질적 관리위주로 대전환을 꾀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교육시설과 설비도 질적인 내실화와 고도화와 더불어 현대화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체보다 10년이나 20년 노후된 설비와 기자재로 교육받은 합량미달의 인재를 더 이상 사회에 투입하는 낭비적인, 결손이 많은 교육이어서는 안된다. Castaldi(1987)에 의하면 교육시설의 현대화란 현재의 학교시설이 구조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최선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정의한다.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대학시설의 현대화를 각 대학이나 전공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거나 더구나 현재와 같이 설비기자재의 기준을 종류수와 점수 및 액수로 나타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IV. 대학설치기준령의 적합성 제고

현대 교육은 목적이 있고 그것을 구체화한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배울 교수와 학생이 있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고 전공분야별 학문과 기술을 제대로 연구·교수·학습하고 새

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려면, 그리고 이를 사회에 적용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자료가 적절히 확보되고 이용되어야 비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단위대학의 목적과 교육프로그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교육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고도사업사회화에 따른 고급 인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대학교육이 거대화·보편화되면서 학문 기술분야가 점차 확대 심화되고, 이에 따른 학습집단(학과)의 종류와 규모가 다양화될 뿐 아니라 교육방법이 공학화되면서 대학시설은 교수와 학생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와 수월성을 추구한 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물론 교육시설과 설비 및 교육자료는 교육활동 즉 교수의 강의와 학생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보조적·수단적·매개적·제2차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육시설·설비 및 자료가 미비하고 불충분하며 적절치 못하다면 교육활동 그 자체를 저해시키고, 그 질을 저하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계획과 우수한 교수와 학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지원이 없으면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따라서 교육의 목표 달성도는 저하되어, 급기야 대학존립의 사회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만다. 아무리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드웨어가 없으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이라도 교육시설과 설비없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대학시설은 교육계획과 동시에, 같은 비중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더구나 오늘날의 대학은 학술을 연구, 교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수와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생활공간으로서, 국가 사회의 발전을 주도하고 문화, 예술을 보존하며 진흥·창출하는 센터로서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대학시설의 확충정비와 현대화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학의 설립인가 조건으로 교원과 동시에 설립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도록 대학설치기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설치기준령은 법령의 보수성과 경직성, 수정절차의 복잡성과 비능률성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새로이 나타나는 학문과 기술을 반영하는 학과의 증설에 적절한 시설설비의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히 변동하는 사회적 기대를 수용하고, 시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속적으로 변모를 거듭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제반 규제를 완화 내지를 폐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학설치기준령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이 융통성있게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건축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대학시설과 관련된 제반 법규도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무릇 교육관련법규는 일반 법규와는 달리 지시·통제·규제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조건과 교육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근본이다.

參 考 文 獻

- 교육개혁위원회, 신한국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제1차 대통령보고자료(1994).
- 김종철 등, 한국고등교육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88-17-48, 한국대학교육협의회(1989).
- 김영철 등, 대학교육체제 개혁구상 연구, CR 92-2, 한국교육개발원(1992).
- 남정걸, “교육의 양적 성장,” 문교행정, 통권 제2호(1982).
- 남정걸, “대학시설의 계획과 투자,” 대학교육, 통권 제12호(1984).
- 남정걸, “교육시설의 실태와 현대화의 좌표,” 교육시설의 현대화와 재원확보 방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1991).
- 남정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교육과학사(1994).
- 서명원, “전환기의 사회변화와 고등교육의 과제,” 전환기에 선 한국 고등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고등교육연구회 창립1주년 기념 세미나 보고서(1989).
- 윤정일 등, 대학 설립·인가 타당성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1990).
- 이현청, “21세기 한국대학 평생교육의 나아갈 방향,” 21세기 대학평생교육의 조망과 과제,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술심포지움 보고서(1994).
- 최운실, “한국대학 평생교육의 실상과 문제점,” 상계 보고서(1994).
- 전성연 등, 대학학기제 및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방안, 대학학사제도 개선 연구회.(199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발전 10개년 계획(1992-2001)(1992).
- Brooks, Kenneth W. et al. *Form Program to Educational Facilities*, Center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College of Education, University of Kentucky(1980).
- Castaldi, Basil, *Educational Facilities Planning, Modernization and Management*, 3rd ed., Boston: Allyn and Bacon(1987).